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90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1일
발 의 자 : 이승미 의원(1명)
찬 성 자 : 송도호, 강동길, 이영실,
김인호, 황인구, 추승우,
우형찬, 김태호, 김상훈 의원
(9명)

1. 제안이유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종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가 참여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의 자문을 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자문사항 및 분과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17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8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7조(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u></p> <p><u>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및 현안 문제에 관한 사항</u> <u>2.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u>
<신 설>	<p><u>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u></p>
<u>제17조 ~ 제26조</u> (생략)	<u>제18조 ~ 제27조</u> (현행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